

## 캡스톤디자인(Capstone Design)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캡스톤디자인(Capstone Design) 교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‘캡스톤디자인’은 학생이 1, 2학년 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과제 기획, 수행, 분석 등의 과정을 팀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, 협업 능력, 실무 능력 등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설계교과목이다.

② ‘캡스톤디자인 주관 전공 및 주관부서’는 캡스톤디자인의 전공교육과정을 편성 또는 개설하는 학과 또는 교양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부서이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3조(강좌 개설)** ① 캡스톤디자인은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 명칭은 캡스톤디자인 혹은 종합설계를 부기하여야 한다.

③ 캡스톤디자인 개설은 주관 전공 교육과정 개설학점 범위 내에서 한다. (2020.2.25.개정)

④ 대학은 캡스톤디자인 시제(작)품 제작을 위한 실험실습비를 지급하며, 재료비 및 제품 제작비 항목에 한한다.

⑤ 교과목은 학기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1학점 당 수업시간은 매주 1시간 이상 학기 총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⑦ 강좌 개설기준은 5명 이상으로 한다.

**제4조(이수자격)** ① 캡스톤디자인 이수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하기 전에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

2. 캡스톤디자인 주관 전공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 (2020.2.25.개정)

3.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한 기업·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신청자격에 합당한 자

**제5조(운영 및 학점인정기준)** ①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창의성, 실무능력, 팀워크, 리더십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팀별 과제를 수행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는 모든 팀은 과제별 수행계획서, 7주차에 중간보고서, 학기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과제계획서: 캡스톤디자인 주요내용, 예산집행, 팀구성 등

나. 중간보고서: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등 포함

다. 결과보고서: 과제 결과, 결론, 실습비 사용내역, 결과물 등 포함

**제5조의2(구성)** 캡스톤디자인팀(이하 ‘팀’이라 한다)은 과제 특성에 따라 팀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지도하는 교수(이하 ‘지도교

수'라 한다) 및 산업체 전문가(이하 '전문가'라 한다)가 팀당 각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 (2020.3.11.신설)

**제5조의3(권고사항)**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자는 교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, 교내 경진대회 입상자는 전국경진대회에 의무 참가기회를 부여한다. 캡스톤디자인을 위한 전용 작업공간에 관련 기자재와 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(조교등)을 배치할 수 있다. (2020.3.11.신설)

**제6조(성적평가)** ① 성적평가는 담당교수가 과제수행 계획서,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평가 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P/NP로 평가한다. 단, 전공 교과목 특성에 따라 등급제로 평가할 수 있다. (2018.8.24.개정),(2020.2.25.개정)

② 캡스톤디자인의 과제 완료 후 주관 전공 또는 부서에서 평가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7조(운영방법)** ① 캡스톤디자인 주관학과 및 부서는 소속 전임교원을 담당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학과 해당 분야의 산업체·지역사회 전문가를 담당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② 캡스톤디자인 주관학과 및 부서는 학생 조별 활동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담당교수 외에 별도의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③ 제1항의 담당교수는 캡스톤디자인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과제 종료 후 각 참여 업체 및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20.3.11.신설)

**제8조(장학금)** 캡스톤디자인의 성과 평가 및 확산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수행일지)** ① 캡스톤디자인 수강 학생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일지로 기록하여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, 수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캡스톤디자인 성적을 무효로 한다.

**제10조(강의시수)** (삭제) (2018.2.27.개정)

**제11조(관련서류 보관)** 캡스톤디자인 관련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2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